

강원도립대학교 직무역량인증에 관한 규정

(제정) 2017-06-19 규정 제468호

(개정) 2019-02-28 규정 제508호

(개정) 2023-05-18 규정 제634호

(개정) 2023-12-01 규정 제65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직무역량인증에 관한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직무역량인증이란 전공·교양·비교과 충족기준에 따른 우수한 성취를 달성함을 의미한다.

제3조(평가도구 개발) 대학은 직무역량인증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.

① 삭제 <2023.05.18.>

② 삭제 <2023.05.18.>

제4조(인증위원회) ① 직무역량인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무역량인증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인증위원회는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교육혁신원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무역량인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
2. 직무역량인증서 수여에 관한 자격 심사
3. 기타 직무역량인증에 필요한 사항

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인증 대상 및 시기) 매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평가기준 및 방법) ① 전공·교양의 평균 학점은 3.6 이상이어야 하며,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충족 기준은 4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삭제 <2019.2.28.>

③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성적증명서 1부
2. 삭제 <2019.2.28.>
3. 삭제 <2023.05.18.>
4.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

제7조(인증 등급 관리) ① 전공·교양의 평균 학점 및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.

1. "Excellent" : 전공·교양의 평균 학점 4.0이상,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40점 이상
2. "Very Good" : 전공·교양의 평균 학점 3.8~4.0미만,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40점 이

상

3. "Good" : 전공·교양의 평균 학점 3.6~3.8미만,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40점 이상

제8조(직무역량인증서) ① 직무역량인증평가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 승인 후 인증 대상 학생에게 직무역량인증서를 수여한다.

제9조(기록 보존) 연도별 직무역량 인증내역은 교육혁신원에서 기록 보존한다.

부칙(2017. 6.19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2.28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5.18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2.01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직무역량인증 산출지표

(전학년 기준)

구분	인증명	인증요건	
		전공·교양 평균 학점	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충족기준
1등급	“Excellent”	4.0 이상	40점 이상
2등급	“Very Good”	3.8~4.0 미만	
3등급	“Good”	3.6~3.8 미만	